

상용화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네트워크형) 수정공고 주요 변경 사항

□ 개요

- '21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공고('20.12.30.) 하였으나 지침개정·시스템 적용 등으로 수정공고 필요
- '21년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공고 변경사항 반영
- 신청 접수기간 연장 : (당초) 1.18 ~ 2.8(2.1) → (변경) 2.1 ~ 2.19

□ 주요변경사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

현 행	개 선	비고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사업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참여율	인건비계상률	
요건검토	사전검토	
과제책임자	연구책임자	용어 통일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사업계획서 Part1	본문 2	
사업계획서 Part2	본문 1	

②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비영리 법인(공기업 포함)은 예외라는 조항 신설('20년 3차 지침 개정사항 반영)
- (부채율 1,000%이상 기업 예외조항) 환전환우선주(RCPS) 추가 ('20년 3차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전라북도 군산시 포함(산업부 고시 지정연장사항 반영)
-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대상으로 하는 조항 신설

③ 지원기준

- (신규채용인력 범위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현금 계상 가능한 신규채용 범위 변경

현행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변경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인건비 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 한도를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신설)

현행
-

변경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④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단서 조항)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생략가능 조항 신설(20년 3차 개정사항 반영)

현행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u>서면평가 생략가능</u>

변경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u>대면평가 생략가능</u>

- (평가절차 단서 조항)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생략가능 조항 신설(20년 3차 개정사항 반영)
- (평가기준) 단계별 평가지표 표기
- (가·감점) 채용실적에 따른 가점 등 변경된 내용 반영(20년 3차 개정사항 반영)

⑤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통구비서류) 혁신법에 따른 용어(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2 등) 변경
-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삭제

⑥ 유의사항

-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3책 5공)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과 관련한 예외 조항 변경(혁신법, 시행령 변경)

현행	변경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 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성과물의 공유)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과 관련한 예외 조항 변경 (혁신법, 시행령 반영)

현행	변경
㉞ <u>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u>	㉞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⑦ 시스템 접수기간 변경

- (당초) 구매조건부 : 2021. 1. 18.(월) ~ 2. 8.(월)
네트워크형 : 2021. 1. 18.(월) ~ 2. 1.(월)
- (변경) 구매조건부·네트워크형 : 2021. 2. 1.(월) ~ 2. 19.(금)